



관세청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관 세 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안내

※ 귀사는 “과세가격결정자료”(이하 ‘과세자료’)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 8개 분야에 해당할 경우 관세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은 수입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하여 잘못 신고납부한 세액의 일시 사후추징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개요 ♣

① 과세자료 제출 생략

❖ ①AEO(수입부문), ②ACVA 결정물품, ③전년도 납부세액 5억원 미만 기업

※ (납부세액 확인)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수입 환급 납세실적 → 제세납부실적 조회(전년도 1년)

② 최초 수입 건만 과세자료 제출

❖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시, 최초 연 1회만 제출

※ 품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면 ‘같은조건’으로 간주

③ 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

❖ 8개 분야 수입 거래 형태별, 해당 과세자료 제출 ※뒷면 참조

※ 8개 분야에 해당 사항 없는 경우, 가격신고 시 ‘미제출 사유서’ 필수 제출

④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30일)

❖ 최초 수입 시 과세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통관 후 30일 내 제출

※ 자료 미비로 사후제출 하는 경우, 가격신고시 ‘지연 제출 사유서’ 필수 제출

⑤ 미제출 시 조치사항

❖ ①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②담보제공 생략 중지, ③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 기타 문의사항

1. 관세사 등 업무전문가와 상담
2.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QR코드 스캔 ⇒ 제도 상세 자료 확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8호]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분야 (8개 분야)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① 권리사용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② 생산지원	-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③ 수수료·중개료	-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 -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⑤ 용기·포장비용	-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⑥ 사후귀속이익	-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⑦ 간접지급금액	-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⑧ 특수관계자 거래	-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 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
2. ①부터 ~ ⑥까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3. ⑦ 간접지급금액: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